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5. 8. 22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6 회 임시회

제 3 차 내무위원회 (1995. 8. 22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개정(법률 제4797호, '94. 12. 22)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서 「읍장, 면장, 동장」을 삭제
- 지방자치법개정(법률 제4741호, '94. 3. 16)으로 별정직 읍·면·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

나. 주요골자

- 읍·면·동장 일반직화에 따른 관계조문 정리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창 환)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에 있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·면·동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제외되었는바 종전에 별정직으로 하여오던 읍·면·동장을 일반직화 하므로써

이에따른 현행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써
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신구조문대비표